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68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민형배·정동영·이개호

양문석 • 문정복 • 임미애

박지혜・김문수・조계원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박정희 군사정권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속기관화 된 경호조직은 후진 국 또는 독재정부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조직을 직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내각제 국가인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

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 과 경호처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 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처장 및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 마.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 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호의 조직·직무범위"를 "경호의 직무범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제1호에 따른 경호의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제3조에 따른 대통령경호국이 경호업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통령경호국) ① 이 법에 따른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둔다.

②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의"를 "대통령경호국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장이"를 "경찰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장이"를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처장은"을 "경찰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처장이"를 "경찰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대통령경호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처장은 직무상"을 "경찰청장은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호처에"를 "대통령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장이"를 "경찰청장이"로, "차장"을 "대통령경호국의 장"으로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 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대통령경호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제1조(목적)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u>경호의 조직·직</u>	<u>경호의 직무범위</u> -
<u>무범위</u>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	2제1호에
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u> 따른 경호의 활동</u>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u>경호활동</u> 을 할 수 있는 구역	
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	<u><삭 제></u>
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	
<u>을 말한다.</u>	
4. "관계기관"이란 <u>경호처가 경</u>	4제3조에
<u>호업무</u> 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따른 대통령경호국이 경호업
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u>무</u>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대 제3조(대통령경호국) ① 이 법에 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 제 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 5. (생 략)
-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要人)
- ② (생략)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 할 수 있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 저 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 | 찰청장은--

따른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둔다. 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②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한다.

제4조(경호대상) ① <u>대통령경호국</u>
의
1. ~ 5. (현행과 같음)
6 <u>경찰청장이</u>
② (현행과 같음)
③
<u>경찰청장이</u>
<u>.</u>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경</u>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 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 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 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 다.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 저 호 및 안전관리) ① (생 략)

-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 은 처장이 된다.
-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 ③ -----대통 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 워으로 구성한다.
- ④ (생 략)
- 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 〈삭 제〉 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세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
호 및 안전관리) ① (현행괴	나 같
<u> </u>	
2	
- <u>경찰청장이</u>	

령경호국 소속 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 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 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 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 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 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삭 제>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삭제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 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의6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 | <삭 제> 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 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 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 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 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 〈삭 제〉 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 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 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 <삭 제>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 1. 신체적 · 정신적 이상으로 6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 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 員)이 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 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 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인정될 때
-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 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 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 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 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u>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u> <u>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u>

1. 연령정년

<u>가. 5급 이상: 58세</u>

나. 6급 이하: 55세

2. 계급정년

<u>가. 2급: 4년</u>

나. 3급: 7년

다. 4급: 12년

라. 5급: 16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 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 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 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 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

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 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 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 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 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 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
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 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처장은 직무상</u>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 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 략)
 -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

제	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 경찰청징</u>	는 경	호를	수행	
	하기	<u>위하여</u>				
제	16조(대통령경	호안기	전대책	위원	
	회) ①)				
			대	통령	소속	
	② (현	.행과 같음	음)			
	3	7	경찰청	장이		

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워이 된다.

④·⑤ (생 략)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 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 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 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 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 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 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 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 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 | <삭 제> 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_			
\odot	경호처에	되거디	거키고ㅁ
(\angle)	/z Q /1 VII	ルクエ	スダケー
()	0 1 1	خا خا ا	0 6 0 1

	대 등	투렁	경	호	국	의
<u>장</u>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 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삭 제〉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 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 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 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에 해당할 때
-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 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 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인정되는 상당한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삭 제> 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 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 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 산상의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를 둔다.

-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 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 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 <삭 제> 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